

2020년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 28.(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5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9건(안전번호 제2020-5065호~510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5065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을 직접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문제가 되는 이미지가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5067호는 안전번호 제2020-5066호와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066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5067호는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5068호~507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5쪽의 게시물 제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게시물 제목이 공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해야 함.
- C 위원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같은 생각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다음은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D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 제목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D, B, C, A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5065호~5102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89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6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평생교육시설에서 홍보 게시물을 제작하면서 ●●● 예능 프로그램 ‘◆◆ ◆◆ ◆◆◆◆ ◆◆’ 포스터 이미지 일부를 이용한 사안임. 전문위원은 2020. 1. 23. 해당 평생교육시설 관계자와 민원 내용에 대해 통화하였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같은 날 전문위원에게 문제가 되는 이미지의 전송을 자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고 전송중단되었음. 문제가 되는 포스터는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음.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심의의결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06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문제가 되는 포스터는 방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음.

- B 위원 :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문제가 되는 이미지는 이미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함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미 전송 중단되어 있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

래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임.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전송중단되어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20-506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6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안전번호 제2020-5066호와 중복으로 심의 요청됨.
(안전번호 제2020-5066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66호는 블로그에서 '블랙클로버 112화'를 자막을 포함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사는 일본 TV도쿄임.
(안전번호 제2020-506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67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전번호 제2020-5066호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066호, 506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20-5067호는 안전번호 제2020-5066호와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이 마땅해 보임.
- D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20-5067호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번호

제2020-5066호는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이므로 시정권고를 해야 함.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06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제2020-506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68호~507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함.

(안전번호 제2020-506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68호 복제·전송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보이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 ““○○○’○ ○○○○○ ○○○○○○○ ○○○○○○○○”라 기재되어 있음. 해당 복제·전송자는 자신이 웹하드에서 판매하는 복제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5069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69호 복제·전송자는 안전번호 제2020-5068호 복제·전송자와 동일인임.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만화)은의 니나 (출판 : AK 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페이지)’를 판매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507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70호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만화)도산코 가루는 참말로 귀여워 (출판 : 서울문화사/DCW)’ 1화부터 7화까지를 zip 파일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파일로 된 이미지 파일을 볼 수 있고 실행하면 만화 감상이 가능함.

(안전번호 제2020-5071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7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만화)도산코 가루는 참말로 귀여워 (출

판 : 서울문화사/DCW)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복제·전송자는 안건 번호 제2020-5068호 복제·전송자와 동일인임.

(안건번호 제2020-5072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72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만화)신암행어사 (출판 : 대원씨아이)' 1권부터 17권까지의 외전을 포함한 완결본을 zip 파일 형태로 판매한 사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068호~507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 같은 이유로 시정권고함에 동의함.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068호~507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73~5102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방송 '■■■■■■■■■■(■■■■)')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

번호 제2020-5077호는 블로그에서 ‘■■■■■■■■■■ 13기 1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13분 21초 가량의 한 화 전체분량임. ‘■■■■■■■■■■ 13기’는 우리나라 ■■■■ 채널에서 2018. 4. 3.부터 2018. 5. 8.까지 방영한 총 12부작 TV 만화임. 해당 영상물을 모니터링한 이유는 과거에 민원신고가 제기되어 후속처리로 모니터링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임.

(방송 ‘■■■■(1973)’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80호는 블로그에서 ‘■■■■ 1기 1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우리말 더빙을 포함한 21분 39초 가량의 한 화 전체분량임. ‘■■■■ 1기’는 일본 TV 아사히 채널에서 1973. 4. 1.부터 1973. 9. 30.까지 방영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MBC 채널에서 2001. 7. 9.부터 2002. 12. 9.까지 방영한 총 52부작 TV 만화임. 참고로 해당 영상물은 만화가 원작임. 1973년도 저작물을 보호원에서 모니터링한 이유는 과거에 민원신고가 제기되어 후속처리로 모니터링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임.

(해당 복제·전송자가 올린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다른 게시물에는 “짤릴시 서이웃거시고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요!”라고 기재되어 있음. 해당 문구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게시물이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안내하고 있음. 해당 복제·전송자는 블로그에서 다른 애니메이션도 다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073~510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모두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모두 불법 전송 사안이며,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C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같은 이유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073~510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065호, 506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5066호, 제2020-5068호~510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2. 6.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